

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알아보기

노인인권이란?

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
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

한솔  노인전문요양시설
너싱홈 청평센터
T. 031-584-3889

노인학대란 ? (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)

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

노인학대의 유형

24시간

노인학대 신고전화
1577-1389

신체적 학대

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



정서적 학대

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 주는 행위



성적 학대

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하는 행위



경제적 학대

노인의 허락없이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는 행위



방임

보호자가 책임과 의무를 거부,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로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


유기
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

노인인권보호지침

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

차별, 착취,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합니다.

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

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케어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습니다.

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

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합니다.

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

어르신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됩니다.
(긴급한 상황 제외)

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

개인적 사생활에 대해 비밀보장을 받습니다.

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

우편,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.

7 정치, 문화,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

정치, 문화, 종교적 활동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합니다.

8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

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

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

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편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.

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

어르신 의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활동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.

11 정보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

시설 입퇴소, 일상생활, 서비스 이용, 제반시설 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.